

시 민

주무관	운영팀장	공원운영과장	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
이동유	허생범	代안창원	08/12 이용태
협 조	시설과장 함석주		

문서번호	공원운영과-15155
결재일자	2014. 8. 12.
공개여부	비공개(5)
방침번호	

장충리뜰야구장
안전보호패드 설치 검토보고

2014. 8.

중부공원녹지사업소
(공원운영과)

장충리틀야구장 안전보호패드 설치 검토보고

남산공원 내 위치한 공공체육시설인 장충리틀야구장의 노후 안전보호패드 시설물 정비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.

□ 장충리틀야구장 현황

- 위 치 : 중구 장충동 산 7-22
- 부지면적 : 6,104㎡
- 건축 물 : 110.75㎡ (본부석 84.44㎡, 공중화장실 26.31㎡) 등
- 설치년도 : 1972년 1월 14일
- 수 탁 자 : 한국리틀야구연맹 한영관
- 위 탁 료 : 무상

※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6조(공원및공원시설의 사용료) 제2호

－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

- 현황사진



□ 검토경위

- 2013년 10월 27일 장충리틀야구장 시장님 방문시 리틀야구연맹 한영관 회장 예산지원건의
 - － 외야 안전보호패드 노후로 어린이 선수 안전사고 우려

- 안전기준에 맞는 안전보호패드로 교체 요청

※ 외야 보호패드 높이 2.4m이상, 보호패드 두께 :80mm이상

(KBO 프로야구 경기장 펜스 보호패드 기본지침)

○ 예산과에서 2014년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사업 예산배정

□ 검토내용

○ 장충리틀야구장 관리위탁조건 제6조 적용여부

『장충리틀야구장 관리위탁조건』

제6조(관리위탁 재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)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위탁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, 위탁시설 및 그 부속물 모두를 안전하게 유지·관리 하여야 하고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본인이 부담 하되 위탁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

② 위탁시설물은 기본 시설물에 한하고, 재산가치와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본시설물을 보완하였을 경우나 제1항에 의거 보수한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
○ 현 장충리틀야구장 재산관리관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임을 감안하여 『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』 제17조(관리) 적용여부

『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』

제17조(관리)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·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□ 검토의견

○ 2005년 서울시 정비 후 현재까지 한국리틀야구연맹 자체 정비하여 사용하였으나 시설 노후로 더 이상 보수하여 사용 할 수 없고 어린이 야구선수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체가 필요한 사항임

- 장충리틀야구장은 우리 시(재산관리관 :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)소유의 행정재산으로 『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』 제17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 KBO 프로야구 경기장 펜스 보호패드 기본지침에 적합하게 보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,
- 다만, 외야 펜스 보호패드 시설 설치 후에는 수탁자(한국리틀야구연맹) 측에 보호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 지도코자 함.